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2
----------	------

발의연월일 : 2014. 3. .

발의자 : 허인환·김영분·이도형 의원
(찬성자 9인)

1.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설립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나.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 나.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정관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5조)
- 다.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건물·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게 관련규정 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을 “인천광역시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2. 지식정보산업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
3. 지식정보산업 창업지원
4. 지식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지식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6. 지식정보산업 업체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전문기술인력지원,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
7. 인천지역 소프트타운 조성 및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8.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9.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8조의 제목 중 “(출연금)”을 “(재산출연)”으로 하고, 본문 중 “필요한 자금을”을 “필요한 경우 토지·건물·자금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 지원등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단법인 인 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 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u></p> <p>제5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인천소프트타운의 조성 및 운영</u> 2. <u>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입주하는 IT기업 지원</u> 3. <u>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u> 4. <u>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지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u> 5. <u>지식산업 분야 국내외전시회, 투 자유치설명회, 학술세미나 개최</u> 6. <u>지식산업 업체에 대한 국내외 마 케팅 지원, 전문 기술인력 알선,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등</u> 	<p><u>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u>인천광역시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조 규 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 시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u> ----- -----.</p> <p>제5조 (사업)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 계획</u> 2. <u>지식정보산업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u> 3. <u>지식정보산업 창업지원</u> 4. <u>지식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u> 5. <u>지식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마 케팅 지원</u> 6. <u>지식정보산업 업체에 대한 국 내외 마케팅 지원, 전문기술인력 지원,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u>

현행	개정안
<p>7. <u>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u></p> <p>8. <u>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u></p> <p>제8조 (<u>출연금</u>)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u>필요한 자금을</u>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p>	<p>7. <u>인천지역 소프트타운 조성 및 시설·장비의 관리·운영</u></p> <p>8. <u>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u></p> <p>9. <u>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u></p> <p>제8조 (<u>재산출연</u>) ----- ----- <u>필요한 경우 토지·건물·자금을</u> -----.</p>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정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구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보완하고, 출연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없음

4. 작 성 자

산업위원회 허 인 환 의원